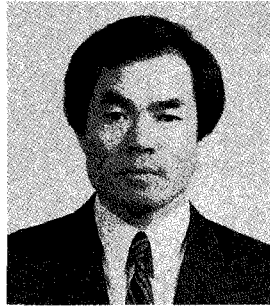


축산물가공업무 이관 추진 활동



김인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국회 청원서 접수

축산물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를 위한 국회 청원을 지난 7월 11일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대표 단체로 하여 국회 사무처에 접수시켰다. 이 청원서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236개 단체가 공동참여하였고, 소개 국회의원은 155명이 서명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관심도를 짐작케 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수십차에 걸친 건의 활동과 대정부 행정쇄신과제 제출등 기회있을 때마다 가공업무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부 부처내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국회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청원서가 접수되기까지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인 많은 축산인들이 있다. 우선 236개 단체 공동청원이 가능토록 각 단체와의 접촉과 대외적인 활동을 추진한 협회의 임직원과 축산 생산자단체의 임직원이 있고, 국회의원 서명이 가능하도록 접촉한 지역 축협장과 임직원, 그리고 낙우회장의 노고가 숨어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명분을 무색케하도록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있었던 점은 농림부에도 이관을 한결 유리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축산농민을 보호하려다가는

4천만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는 강변이었지만,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의 청원 동참은 보건복지부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이 청원은 3당 국회의원이 소개 서명하였기에 농림해양위 3당간사 즉, 신한국당 이상배, 국민회의 이길재, 자민련 정일영의원을 대표 소개자로 하여 제출하였다. 7월 11일 접수된 청원서는 7월 16일 해당 상임위원 농림해양위에 이관되어 당일과 22일에 상임위에서 논의되었고, 7월 28일 재론되어 농림해양위내에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논의 중에있다.

청원내용은 이미 행정쇄신위에서 결론 지어진대로 축산물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를 위해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축산물 전과정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등 제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관장토록하고, 보건복지부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검사에 참여토록되고 그 결과 발표는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축산물 위생관련 기준은 양부처가 합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모든 위생기준과 축산물검사에 사실상 관여토록 한 것이다.

이에 국회에 청원한 청원서 원문을 소개코자 한다.

국회의원 155명이 서명한 청원소개 의건서는 다음과 같다.

청원 소개 의 건 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성 명 :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남용 외 인

건 명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7년 7월 일

소개 의 건

1.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는 종전 농림부에서 관장하였으나 '8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축산농민의 원성을 사왔고, 이에 농림부로 가공업무를 환원시켜 축산물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축산농민의 숙원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축산물의 업무관장에 있어 농가의 생산 및 도축단계는 농림부가, 가공·유통·판매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가. 축산물 소비확대 추세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되지 못하고

나. 완전개방에 대응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어려울 뿐더러

다. 가축의 특성상 사육단계에서부터 사양·사료·약품·환경등의 위생적인 관리와 동시에 도축·가공·유통등 각 단계에서 가축위생 전문가에 의해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되어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못하며

라. 행정책임을 명확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축산물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탄저병·소결핵·부루셀라등)이 있어 전문 수의사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인 바 농림부는 축산국, 동물검역소, 수의과학연구소등 전문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소비자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축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이나 이원화체제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산지 소값은 폭락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고조됨에도 식육점(보건복지부 관장)의 소비자 가격은 소폭인하 된다거나 분유체화로 국내 낙농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식품업체(보건복지부 관장)는 값싼 모조분유를 수입해다 비싸게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으로 소비자도 축산농민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보건복지부가 가공식품관리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탄저병 사건, 우유 잔류물질 사건, 발암물질 보도파문, 0-157사건 등을 야기시킨 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등으로 축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도 책임지는 사례가 없어 축산농민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이원화 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식품관리가 생산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농민관장 부처인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개정이 합당하므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청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 청원

축산업의 숙원과제인 축산물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를 통해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식품관리의 책임부서를 농림부가 맡는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가축사양 단계에서부터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토록하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업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1. 현행 축산물업무관장체계의 문제점

가. 현재 축산물 관리업무의 체계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가축 사양단계 및 도축장·도계장·집유장까지의 업무영역은 농림부가, 육가공·유가공 및 운반단계, 식육판매·제품제조·가공 단계와 소비자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장하는 이원화 체계로서 완전개방화로 인한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시장은 완전개방되었고 국민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축산업의 육성발전과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의 업무관리 영역 이원화 체계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나.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체계입니다. 축산물 가공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인 가축의 특성상 사육 단계에서부터 사양·사료·약품·환경등 위생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동시에 도축·가공·유통 각 단계에서의 위생조치가 가축위생 전문가에 의해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나 현행 이원화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 축산업의 계열화 추세에 역행하는 관리체제로 계열사업체의 불편과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보다 값싼 양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에 축산업 계열화는 시대추세이고, 동일기업내 동일장소에서 도축이나 집유·가공 등을 통합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복적으로 받고 있어 축산관련기업의 경쟁력 저해요소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탄저병, 소결핵, 부르셀라 등)과 기생충병 및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0-157등)이 많으므로 질병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서 사육단계에서부터 사양·도축·가공·유통·판매단계까지 일관성있게 관장되어야 소비자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바, 농림부는 위생관련 전문조직이 중앙에는 축산국, 동물검역소, 수의과학연구소가 있고, 시도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어 전문적 위생관리가 가능하여 가축 사육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미생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오히려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 우유나 육류는 부패·변질되기 쉬우므로 가공식품개발로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확대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업무와 계열화사업 지원, 축산물통합처리장 건설 및 유가공시설 지원과 식육유통 센터지원 및 식육처리기술교육은 농림부가 맡으

면서도 축산물의 가공이후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함으로써 가공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산지소 값은 폭락하여 농민이 피해가 막심하지만, 식육점(보건복지부관장)의 소비자 가격은 거의 인하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는 분유재고로 인해 낙농위기가 가중됨에도 식품업체(보건복지부관장)들은 외국의 값싼 모조분유 수입에 혈안이 되어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오히려 비싸게 팔리고 있어 소비자도 축산농민도 피해자입니다.

2. 이원화체제로 인한 최근의 피해사례

가. 94년 12월 호주산 수입 쇠고기의 농약(클로르후르아주론 : CFZ)잔류문제 발생시 시험기준·방법이 없어 (검사항목, 기준, 시험방법, 규정의 제정·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동물검역소에서 외국의 시험방법을 긴급도입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국내 축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나. 95년 2월 각매스컴을 통해 소의 등골을 먹은 사람이 탄저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보도함으로써 국내산축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쇠고기 소비둔화와 소값 하락 등 심각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역학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 95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우유 잔류물질 언론 발표사건 여파로 낙농선진국에 손색없는 우유를 생산하고 서도 소비자의 우유 기피로 인해 동서유업이 도산하는등 유업체들이 파산 상태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해당 유업체에 납유하던 납유 농가들의 생업을 극도로 어렵게하여 낙농 불황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라. 95년도에 일본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장기화되자 보건복지부는 마장동에서 판매되는 소간에서 0-157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로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증을 유발시켜 소내장을 비롯한 부산물이 전혀 팔리지 않는 등 일대 혼란이 초래되어 축산농민의 피해가 심각하였으나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 95년 9월 분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유출 보도로 국민을 경악케함으로써 우유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시켜 수입유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케 하였으나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해명으로 끝났음에도 그 피해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과성의 폭로성 발표로 거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 때문에 국내 축산농가들은 늘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한 사실확인

가. 식품의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 고유업무라는 주장으로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를 동원해 반대하지만, 축산물의 생산목적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수 없는바, 선진국이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생산단체를 관장하는 부처 즉,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체계가 예가 될 수 있거니와, 85년 7월 이전까지 농림부가 관장하던 가공업무를 5공 당시 청와대의 주도로 공청회 개최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관된 점 등을 확인하시면 고유 업무라는 명분으로 이관을 미룰수 없을 것입니다.

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 1차 실무회의(96. 4) 및 2차 본회의(97. 2)를 통해 15개 시도·3개 시군·유관단체등 33개 기관에 의견조회를 거쳐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행정쇄신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가공업무를 농림부 일원화가 결정됨으

로써 객관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 업무이관의 필요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다. 가공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면 축산농민을 보호하려다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지만, 생산단계에서부터 위생적인 관리체제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소비자들이 국산축산물을 선호토록 함으로써 무한 경쟁시대에 축산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기본과제 이거니와, 최종단계 축산물의 수거검사 권능을 보건복지부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중 축산물을 검사함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견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위생기준의 제정역시 양부처 합의로 가능토록하여 소비자의 안전문제에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라. 축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 모두가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일원화하여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고, 세계에서 식품 안전성 문제를 가장 엄격하여 다루고 있는 미국에서도 축산물은 FDA가 맡지 않고 농무성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음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가공업무 일원화 방안을 이미 대통령께 건의, 확정된 과제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97년 4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 농림부, 관련단체 등에 공문 통보하여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이해관계인들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관계자들이 쇄신 내용을 이해하고 행정쇄신작업에 동참토록 하는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농림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정부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확정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원요약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축산물가공식품 관리가 생산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일원화 되도록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으로 이미 행쇄위가 결정한 바와같이 종합적·일관적 지도관리 차원에서 가공식품의 전과정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등 제반행정적 업무 및 위생검사업무를 농림부가 관할토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제 3자적 입장에서 최종판매단계의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에 참여토록하되 검사 및 조사결과 발표는 농림부와외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공표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각종 축산물위생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합의를 통해 제·개정되도록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개 서명한 155명 국회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한국당

권영자의원, 권익현의원, 김기재의원, 김길환의원, 김동욱의원, 김문수의원, 김석원의원, 김영일의원, 김영진의원, 김용갑의원, 김일윤의원, 김종호의원, 김종위의원, 나오연의원, 노기태의원, 맹형규의원, 박세직의원, 박시균의원, 박우병의원, 박종웅의원, 박주천의원, 박희태의원, 백승홍의원, 서석재의원, 서한샘의원, 서 훈의원, 송훈석의원, 신경식의원, 심정구의원, 안상수의원, 오세응의원, 원유철의원, 윤한도의원, 이강두의원, 이경재의원, 이국현의원, 이규택의원, 이상배의원, 이상현의원, 이신범의원, 이상희의원, 이원구의원, 이용삼의원, 이우재의원, 이윤희의원, 이응선의원, 이재명의원, 이재오의원, 이해구의원, 임인배의원, 임진출의원, 조진형의원, 주진우의원, 최연희의원, 최욱철의원, 하순봉의원, 황낙주의원(57인)

▶ **새정치국민회의**

국창근의원, 김경재의원, 김근태의원, 김명규의원, 김봉호의원, 김상현의원, 김성근의원, 김영진의원, 김영환의원, 김옥두의원, 김원길의원, 김인근의원, 김종배의원, 김진배의원, 김태식의원, 남공진의원, 박광태의원, 박상규의원, 박정훈의원, 방용석의원, 배종무의원, 설 훈의원, 신기남의원, 안동선의원, 양성철의원, 유재건의원, 윤철상의원, 이기문의원, 이길재의원, 이상수의원, 이석현의원, 이윤수의원, 이 협의원, 임복진의원, 임채정의원, 장성원의원, 장영달의원, 장재식의원, 정동영의원, 정동채의원, 정세균의원, 정호선의원, 조성준의원, 조순승의원, 조찬형의원, 조한천의원, 조홍규의원, 채영석의원, 천용택의원, 천정배의원, 최선영의원, 최재승의원, 최희준의원, 한영애의원, 한화갑의원(55인)

▶ **자유민주연합**

구천서의원, 권수창의원, 김고성의원, 김광수의원, 김범명의원, 김복동의원, 김선길의원, 김종학의원, 김철환의원, 김현욱의원, 류중수의원, 박구익의원, 박신원의원, 박종근의원, 박철언의원, 변웅전의원, 안택수의원, 어준선의원, 오용운의원, 이건개의원, 이동복의원, 이상만의원, 이양희의원, 이원범의원, 이재창의원, 이정무의원, 정상구의원, 정상천의원, 정석모의원, 정우택의원, 정일영의원, 조영재의원, 지대섭의원, 한영수의원, 한호선의원, 함석재의원, 허남훈의원, 황학수의원(38인)

▶ **민주당**

권기술의원, 권오을의원, 하경근의원(3인)

▶ **무소속**

김영준의원, 김화남의원(2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의 변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는 이제 당연한 자리찾기 일환일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내세우듯 잘못 이관된 것을 제자리에 바로 자리잡도록 하여 더 이상의 농민 피해를 줄이자는 내용임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고무되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였고, 이에 행태위 실무회의 및 본회의의 만장일치로 농림부 일원화를 결정하고서도 보건복지부의 반대 때문에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대통령께 건의하여 확정된 사안이 부처의 반대로 불가능해진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건의하며 누구를 의지하여 축산업의 문제점 타개를 호소 할 것인가. 또 국무총리는

행정조정실장 명의로 97년 4월 7일자 공문에서 행태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를 비롯한 부처 및 기관 단체에 요청하였고, 97년 내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개정 및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그러고도 보건복지부 반대 때문에 다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행정부내에서 최고의 권력층인지,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사안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속수무책인지 궁금하기 짝이없다.

이미 수차에 걸친 성명서 발표와 건의서등으로 일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하루속히 업무이관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무려 15개 항목으로 발송한 바 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 중로구 세종로 77 / 전화 (02) 734-9343-4 / 전송 732-7155 / 담당 하현봉

문서번호 국행일 05090-27
시행일자 97. 4. 7

신	지
경	시
일	결
자	체
간	공
수	공
번	람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행정쇄신대책반장

제목 '행정쇄신 확정과제 송부

1. 국행일 05090-27(93.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제118, 119, 120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대통령에 건의, 확정된 '행정쇄신 확정과제'를 문인국과 같이 송부하니 관계부처에서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추진일정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부처에서는 타기관에서도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부처 및 시·도는 물론 일선 행정기관에까지 확산·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각 부처에서는 「확정과제」를 산하 및 일선기관과 관련단체, 협회 등이 해관계인들에게도 신속하게 전파하여 관계자들이 쇄신내용을 이해하고 정부의 행정쇄신 작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쇄신 확정과제' 1부, 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수신처 : 가13, 16, 26, 30, 32, 33, 나01-06, 10-18, 행정조정실(제442-3)

국회의 활동에 기대

남은 것은 국회의리는 판단으로 국회에 청원하게 된 것이다. 어차피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래도 민의를 수렴한 국회의 활동에 기대를 하면서 청원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국회를 수차에 걸쳐 드나들었고, 신한 국당 주요 당직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건의하여왔다. 한결같은 대답은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므로 행정부처 간의 합의를 중용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행쇄위가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를 무시하고도 반대하는 터인데 다시금 합의 운운하는 것은 업무 이권이 불가능함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예 한술 더 떠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고, 거기에 축산수의 관련국을 신설하는 발상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중요한 식품과 관련한 안전을 책임진 부처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

국민의 중요한 식품과 관련한 안전을 책임진 부처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금까지의 작태를 보면 국민의 식품안전을 빌미로 자리 차지를 계획하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식품안전의 미명하에 축산농민의 피해쯤은 관심사항이 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합의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한 한심스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금까지의 작태를 보면 국민의 식품안전을 빌미로 자리 차지를 계획하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식품안전의 미명하에 축산농민의 피해쯤은 관심사항이 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합의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한 한심스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법 개정이 불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다음 국회에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추가 청원을 농단첩 명의로 추진하고 있다. 155명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서명에 참여케하여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요구와 압력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강력한 압력 수단이 될 유권자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기어코 법개정을 성사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원서 제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국회의원에게 수시로 전화 걸기와 건의 활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우리 스스로의 과제인 것이다. (㉠)